

	역량기반 교육과정 성취도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3-4-22		
		제정일	2020. 03. 13.		
		개정일			
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역량기반 교육과정 역량성취도(이하 “성취도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량성취도 정의) ① 역량성취도란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를 의미하며 학생 역량향상도와 달성도를 측정한다.

제3조(주관부서) 역량성취도의 관련 업무 전반의 총괄 부서는 교무처로 한다.

제4조(역량성취도 측정) ① 역량성취도는 학생 역량 향상도와 달성도로 구성되며 학생 역량향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핵심역량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역량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역량점수를 산출한다.

② 대학핵심역량진단검사는 대학핵심역량진단도구를 이용하여 시행하며 학생들이 보유한 대학의 핵심역량을 측정하여 역량향상도를 산출한다.

③ 학생역량점수는 역량 전공교과목, 역량 교양교과목 그리고 역량기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역량 점수의 합을 의미하며 학교 또는 학과의 목표 역량에 대한 역량달성도를 측정한다.

제5조(역량인증서) ① 교무처는 학생이 성취한 핵심역량에 대한 역량인증서(이하 “인증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고 관리한다.

② 인증서는 학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한다.

제6조(역량성취도 활용) 역량성취도는 학과와 대학의 교육과정 질 관리 및 교육과정 개선의 기본 자료로 관리하고 활용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